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남궁역,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문 성 호 의원입니다.

- 이렇게 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
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
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그럼, 「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‘서울로 7017’의 2017년 개장 이후 민간 위탁으로 운영관리 되었던 것을 22년 현재 市 직영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탁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발 의하였습니다.

- 또한 ‘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’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‘서울로 7017’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 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